

서울특별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보고자료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주요 업무 보고



2022. 10.

서울특별시교육청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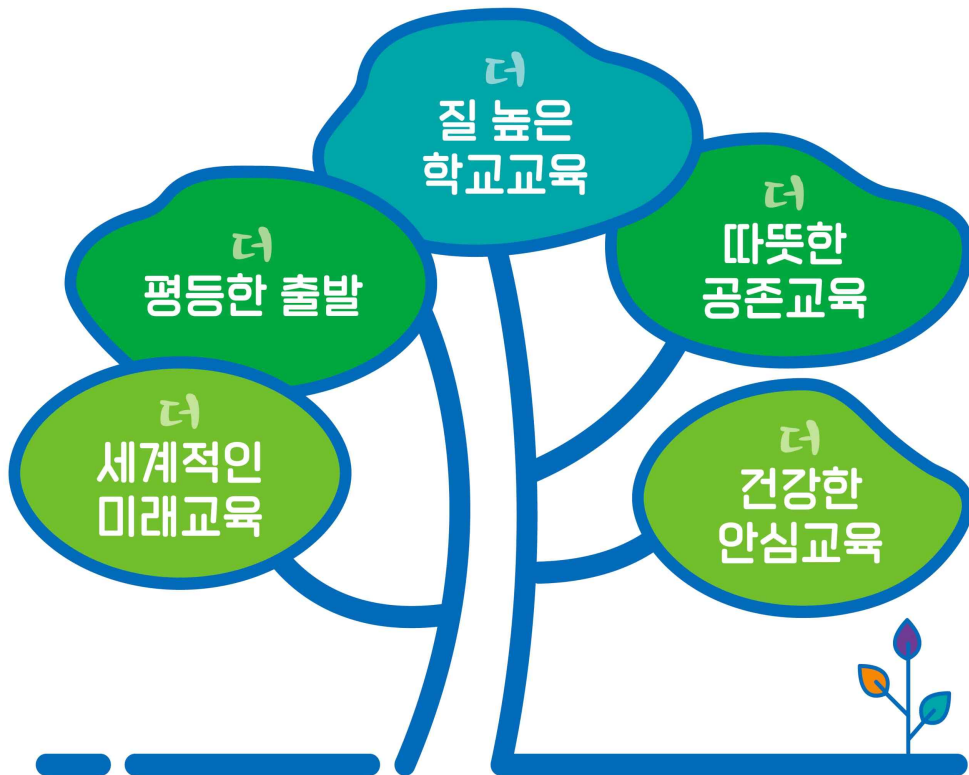
교육 지표

생각이 자라는 교실

함께 성장하는 학교

미래를 여는 교육

정책 방향



1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 사업 개요

- 목적: 단위학교 평화·통일교육 역량 강화
- 근거: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2019.5.16.)
- 주요 내용
 - 교육과정 연계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프로젝트 수업 지원
 - 학생 참여·체험 중심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원의 평화·통일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체험 연수, 워크숍 운영 지원

□ 추진 목표

세부사업명	추진시기	물량
평화·통일 프로젝트 수업 지원	연중	25교
함께가는 평화의 길, 평화캠프	5~7월	2회
평화통일교육 교원전문성 제고	연중	4회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지원	연중	9팀
통일교육연구학교 운영 지원	연중	1교
서울통일관 운영 지원	연중	1교
평화·세계시민·통일교육 실천동아리	연중	115교

□ 추진 계획

- 평화·통일 프로젝트 수업 지원
 - (목적) 교육과정 연계 평화·통일 프로젝트 수업 활성화 및 미래세대 통일역량 함양
 - (기간) 2022. 3월 ~ 12월

- (대상) 초·중·고 중 희망교
 - (내용) 학급 또는 팀 단위(동학년 또는 교과 간) 프로젝트 중심의 평화·통일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학생참여중심 협력, 토의, 토론, 체험 등을 통한 평화·통일교육 실천 지원
- 함께 가는 평화의 길, 평화캠프
- (목적) 학생 참여·활동 중심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미래세대 평화·통일 인식 개선 및 관심 확장
 - (기간) 2022. 5월, 7월
 - (장소) 강화도, 강원도 고성
 - (대상) 초등: 학생, 학부모(가족동행) 중등: 학생, 교원(사제동행)
 - (내용) 교원·학생·가족이 함께하는 평화통일 현장체험교육으로, 남북접경지역 방문, 통일전망대, DMZ박물관 탐방 등을 통해 통일공감대 조성
- 평화통일교육 교원 전문성 제고
- (목적) 교원의 평화통일교육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전문성 함양
 - (기간) 2022. 3월 ~ 12월
 - (대상) 초·중등 교원
 - (내용) 평화통일 프로젝트 수업지원 워크숍, 평화통일교육 직무연수
-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 (목적) 평화통일교육 공동 연구협력적 실천을 통한 교원 역량 강화
 - (기간) 2022. 3월 ~ 12월
 - (대상) 초·중·고 교원 5~10명 내외(2개교 이상으로 구성)
- ※ 학교급별 혼합팀 구성 또는 동일 학교급 교원 간 구성

- (내용) 교육과정 연계 학생 평화·통일교육 수업안 및 학습자료 개발·적용, 학생 참여 체험형 평화통일교육 실천 프로그램 개발 등

○ 통일교육 연구학교 운영 지원

- (목적) 평화감수성 배양을 통한 통일교육 실천 모델 제시
- (기간) 2021. 3월 ~ 2023. 2월
- (대상) 중.고등학교 중 희망교
- (내용) 학교급에 맞는 맞춤형 통일교육 실천 모델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의 타당성 및 적합성 검증

○ 서울통일관 운영 지원

- (목적) 서울통일관 관람 및 체험을 통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 (장소) 서서울생활과학고 내
- (대상) 초·중·고 학생, 교원 및 단체 등
- (관람시간) 연중 운영, 평일(월~금) 09:00 ~16:00, 토, 일,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서서울생활과학고 홈페이지
접속→서울통일관→통일관안내→관람신청서→서식다운 후 작성

○ 평화·세계시민·통일교육 실천동아리

- (목적) 학생 참여·체험 중심 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한 미래세대 역량 강화
- (기간) 2022. 3월 ~ 2023. 2월
- (방법) 학교자율사업운영제
- (대상) 초·중.고등학교 중 희망교
- (내용) 학생 중심 동아리 활동을 통해 평화통일신문 발간, 뉴스제작, 캠페인, UCC 제작·공유, 독서토론, 현장 체험, 체험부스 운영, 교내 행사와 연계한 홍보활동 등

□ 추진 실적

- 평화·통일 프로젝트 수업 지원: 25교 선정(초13교, 중5교, 고7교)
 - 교당 2,000천원 지원, 총 50,000천원
- 함께가는 평화의 길, 평화캠프
 - 초등: 가족동행 캠프 50팀 100명(5.27.(금), 5.28.(토) 각 25팀씩)
 - 중등: 사제동행 캠프 10팀 30명(7.22.(금)~7.23.(토) 1박2일)
- 평화통일교육 교원전문성 제고
 - 평화통일교육 교원 직무연수: 초·중등교원 40명, 15시간
 - 평화통일 프로젝트 수업 운영 지원 워크숍 2회
 - 평화통일 프로젝트 수업 운영 지원 자유훈수 1회
-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9팀(학교급, 학교간 혼합 구성)
 - 교당 1,460천원 지원, 총 13,140천원(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지원)
- 통일교육연구학교 운영 지원: 중1교
 - 교당 18,000천원 내외 지원(통일부 지원)
- 서울통일관 운영 지원
 - 최근 3년간 지원 현황
2020년(30,000천원) → 2021년(5,000천원) → 2022년(5,000천원)
- 평화·세계시민·통일교육 실천동아리 운영 지원
 - 초11교, 중54교, 고50교 총 115교
 - 학교자율사업운영제로 교육공동체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500천원 ~ 9,000천원)

□ 향후 추진 일정

- 통일교육연구학교 운영 보고회: 2022. 11월
- 평화·통일 프로젝트 수업, 학교 간 교원학습 공동체 운영 성과 및 사례 공유: 2022. 12월
- 평화·세계시민·통일교육 실천동아리 사례 나눔 및 운영자료집 제작 배포: 2022. 12월

□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작성기준일: '22.10.13)

사업명	'22 예산			'21 최종예산	집행액 및 집행률		비고
	본예산	특교 등	계		원인행위액 (집행률)	지출액 (집행률)	
프로젝트수업 실천 지원	-	50,000	50,000	30,000	50,000 (100.0)	50,000 (100.0)	
평화캠프	42,400	-	42,400	52,400	38,120 (89.9)	27,360 (64.5)	
교원 전문성제고	-	60,000	60,000	55,000	44,232 (73.7)	23,750 (39.6)	
교원학습공동체	-	-	-	-	-	-	※연구정보원 예산 지원
연구학교 선정·지원	-	-	-	-	-	-	※통일부 예산 지원
통일관 운영지원	5,000		5,000	5,000	5,000 (100.0)	5,000 (100.0)	
동아리운영 지원	15,400	-	15,400	20,400	15,400 (100.0)	15,400 (100.0)	
	62,800	110,000	172,800	162,800	152,752 (88.4)	121,510 (70.3)	

2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조성 및 운용

기금 개요

- 설치목적
 - 남북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 소요 자금의 적립·조성
- 설치근거
 -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683호(2020. 9. 24. 일부 개정)
- 기금의 재원
 -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 기금운용수익금(이자수입 등)
- 기금의 용도
 - 남북교육 상호 발전 및 신뢰 구축,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학예분야 교류 협력, 인도적 교육지원, 학생 상호 간의 교류 등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 지원

추진 목표

세부사업명	추진시기	물량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연중	1단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연중	1단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운용	연중	연 1,000,000천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연중	

□ 추진 계획

○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당연직(부교육감, 국장) 포함 위촉직 위원 15명 이내
- (임기) 2년(당연직 재직기간,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
- (역할) 남북교육교류협력 및 기반 조성, 행·재정적 지원 사항 심의
남북교육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 협의 사항 심의

○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당연직(부교육감, 국장) 포함 위촉직 위원 7명
- (임기) 2년(당연직 재직기간,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
- (역할)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

○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

- (목적) 교육·학예분야 남북교육교류 협력 사업 및 기반조성 사업 추진
- (용도) 협력사업 필요 자금 지원,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경비 지출
- (대상)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 추진 법인, 단체, 개인
- (조성) 연 10억원(2020년 최초 설치)
- (존속기한) 기금설치일로부터 5년(존속기한 2025. 9. 23.)
- (운용)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및 기반조성사업 추진

○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 (목적) 지속가능한 남북교육교류협력을 통해 남북 교육 상호 발전 및 한반도 공동 번영, 평화통일 선도
- (대상)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 추진 법인, 단체, 개인 및 우리청 소속 초·중·고 학생 및 교원
- (주요내용)
 - 남북 교육 상호 발전 및 신뢰 구축을 위한 역사 탐방
 -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학예 분야 학생 문화, 예술, 스포츠 교류

- 북한 교육기관 및 학생 교구, 비품, 교육복지 등 인도적 지원
- 남북 상호 이해 및 발전을 위한 환경조성 사업

□ 추진 실적

○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총 14명
- (운영) 회의 및 위촉식 개최: 2022. 5월, 8월, 10월(3회)

○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총 7명
- (운영) 회의 및 위촉식 개최: 2022. 5월, 8월, 10월(3회)

○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 사업 추진

□ 통일교육주간 통일교육활성화 지원사업 ‘교실로 온 평화통일’

- (목적) 학교의 자발적인 통일교육주간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 (기간) 2022. 5. 23.(월) ~ 7. 22.(금)
- (대상) 서울시 관내 초·중·고 희망교 87교
- (내용) 통일교육주간(매년 5월 넷째 주) 전후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통일’, ‘평화’ 를 주제로 하는 수업 또는 활동 실시를 지원하기 위해 희망 도서와 교구를 지원 후 사례 공유

□ 평화통일 청소년리더 양성 프로그램 ‘2022 우리는 평화지킴이’

- (목적)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평화·통일 인식 개선 및 관심 확장
- (기간) 2022. 4월 ~ 10월(주말 11회 운영)
- (대상) 서울시 관내 중·고등학생 중 희망학생 36명
- (내용)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일회성 교육이 아닌 참여활동 중심, 강의, 연구, 토의, 토론, 정책 제안, 현장 탐방 등을 연간 계획에 의하여 운영

□ 향후 추진 일정

-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필요시
- 통일교육 역량강화 핵심리더 연수: 2022. 11월

□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작성기준일: '22.10.13.)

사업명	'22 예산		'21 최종예산	집행액 및 집행률		비고
	기금예산	계		원안행위액 (집행률)	지출액 (집행률)	
학생생활지도지원 (남북기금-역사탐방)	150,000,000	150,000,000	-	0 (00.0)	0 (00.0)	
학생생활지도지원 (남북기금-교류협력)	250,000,000	250,000,000	-	0 (00.0)	0 (00.0)	
학생생활지도지원 (남북기금-교육지원)	250,000,000	250,000,000	-	0 (00.0)	0 (00.0)	
학생생활지도지원 (남북기금-환경조성)	250,000,000	250,000,000	69,400,000	109,247,280 (43.7)	98,940,420 (39.6)	
학생생활지도지원 (남북기금-운영비)	29,600,000	29,600,000	8,600,000	13,474,980 (45.5)	13,364,980 (45.2)	
학생생활지도지원 (남북기금-업무추진비)	4,000,000	4,000,000	2,000,000	300,000 (7.5)	300,000 (7.5)	
기관기본운영비 (위원회운영)	2,400,000	2,400,000	-	800,000 (33.3)	800,000 (33.3)	
내부유보금 (예치금)	1,997,787,000	1,997,787,000	1,922,317,000	1,997,787,000 (100.0)	1,997,787,000 (100.0)	
계	2,933,787,000	2,933,787,000	2,002,317,000	2,121,609,260 (72.3)	2,111,192,400 (72.0)	



참고자료1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단

□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명단

연번	소속기관	직위	성명	비고
1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직무대리	최 승 복	당연직 위원장
2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구 자 희	당연직부위원장
3	초등교육과	장학관	김 유 상	위촉직
4	중등교육과	장학관	양 정 순	위촉직
5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보좌관	성 현 국	위촉직
6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이 종 태	위촉직
7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김 혜 영	위촉직
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연구위원	이 창 희	위촉직
9	(주)쉐도우캐비닛	대표	김 경 미	위촉직
10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	최 혜 경	위촉직
11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김 지 수	위촉직
12	하자센터	센터장	황 윤 옥	위촉직
13	서울문래초등학교	교 장	배 희 숙	위촉직
14	압구정고등학교	교 감	박 상 정	위촉직

□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단

연번	소속기관	직위	성명	비고
1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직무대리	최 승 복	당연직 위원장
2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구 자 희	당연직부위원장
3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보좌관	성 현 국	위촉직
4	전 서울시의회	전 교육위원회 위원	황 인 구	위촉직
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실 장	최 용 환	위촉직
6	언주중학교	교 장	고 소 향	위촉직
7	서울봉은초등학교	교 감	김 경 하	위촉직



참고자료 2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현황

○ 통일교육연구학교 운영 : 총 1교

연번	종류	연구영역	연구과제	소속청	학교명	연차
1	시범	통일교육	평화감수성 배양을 통한 통일교육 실천 모델 개발	북부	온곡중	2/2

○ 서울통일관 운영 지원

- 최근 3년간 지원 현황

구분	2020	2021	2022
지원액	30,000천원	5,000천원	5,000천원

○ 학생통일체험프로그램(학생체험동아리) 운영

- 최근 3년간 지원 현황

구분	2020	2021	2022
학교수	30교	50교	※학교자율 사업운영제

○ 평화·통일교육활동(프로젝트 수업 실천) 지원

- 최근 3년간 지원 현황

구분	2020	2021	2022
학교수	30교	20교	25교

- 2022학년도 운영·지원 현황

구분	학교수	해당학교명
초	13교	대치초, 서일초, 강빛초, 풍성초, 장수초, 영등포초, 상현초, 불암초, 상원초, 선곡초, 신계초, 신방학초, 흥연초
중	5교	방산중, 신서중, 세화여중, 마포중, 대원국제중
고	7교	금호고, 선사고, 대원여고, 성남고, 염광고, 진명여고, 충암고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1. 기금 운용 총칙

1. 기금 설치 개요

- 설치근거: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2020.9.24. 제7683호)
- 설치목적: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특별시민의 남북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 설치년도: 2020년

2.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

가. 기금 사업의 목표

- 지속가능한 남북교육교류협력을 통해 남북 교육 상호 발전 및 한반도 공동 번영, 평화통일 선도

나. 2022년도 기금 사업 개요

- 남북 교육 상호 발전 및 신뢰 구축을 위한 동북아 역사 탐방
-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학예 분야 학생 문화, 예술, 스포츠 교류
- 북한 교육기관 및 학생 교구, 비품, 교육복지 등 인도적 지원
- 남북 상호 이해 및 발전을 위한 환경조성 사업

다. 기금 조성·운용 주요 내용

1)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금명	'21년도 말 조성액(a)	'22년도 기금운용계획		'22년도 말 조성액(e) (d=a+b-c)	유자금 미회수채권(e)	총규모 (f=d+e)
		조성계획(b)	집행계획(c)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1,922,317	1,011,470	936,000	1,997,787	·	1,997,787

※ '21년도말 조성액(a): '21년도말 기금결산금액을 추정 한 조성액

2) 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21년도 말 조성액(a)	'22년도 기금운용계획		'22년도 말 조성액(e) (d=a+b-c)	비고
		수입계획(b)	지출계획(c)		
합 계	1,922,317	1,011,470	936,000	1,997,787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920,000	1,000,000	936,000	1,984,000	
기금운용수익(이자수입)	2,317	11,470	-	13,787	

3)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재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교원 및 학생, 소속 직원, 서울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관련 외부 위원 등
-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

4) 지원 기준 및 계획

- 기금 설치 목적과 부합 정도 및 사업 내용, 사업비 적정성 등 고려
-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후 추진

(단위: 천원)

구분	'22년 주요 지출계획	집행액	지원 범위
역사 탐방	· 남북 교육 상호 발전 및 신뢰 구축을 위한 역사 탐방	150,000	사전(후) 운영비, 탐방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여비 등
남북교육교류 협력사업	· 남북학생간 문화·예술·스포츠 교류 · 학생 교사 북한 교육기관 방문, 자매결연 교육교류 등	250,000	교육교류를 위한 사전(후) 운영비, 인건비, 운영비, 여비 등
북한교육지원 협력사업	· 교육교류를 통한 교구·교재 지원 등 각종 교육복지와 관련된 사업 · 북한 각급 학교에 교육비품 지원 및 북한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과 관계된 교육지원협력 사업 추진	250,000	교육지원(교구, 교재, 비품, 교육복지 등)에 관계된 현물구입 등
환경조성 사업	· 남북 상호 이해 및 발전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메타버스) 구축 · 통일교육주간 축제 및 평화지킴이, 역량 강화 사업 추진	250,000	환경조성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학교 교부금, 인건비, 물품 구입 등
※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공통 예산		33,600	행사용품, 수당 등
기본경비		2,400	위원회 운영
합계		936,000	
·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 남북교육교류사업 특성상 지원 계획 및 지원 범위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라. 기금 자산 관련 주요 현황

(단위 : 천원)

자산구분	'20년도 말 잔액	'21년도 계획			'22년도 계획			증감(b-a)
		신규	처분	잔액(a)	신규	처분	잔액(b)	
금융자산	1,000,000	2,002,317	8,000	1,922,317	2,933,787	936,000	1,997,787	75,470
예치금 (정기, 보통예금)	1,000,000	2,002,317	8,000	1,922,317	2,933,787	936,000	1,997,787	75,470

※ 예치금: 과년도 잉여금, 이월금은 예치금으로 계상

II. 자금 운용 계획

1.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입 계획				지출 계획			
수입 항목	'22년 수입액	'21년 수입액	증감	지출 항목	'22년 지출액	'21년 지출액	증감
합 계	2,933,787	2,002,317	931,470	합 계	2,933,787	2,002,317	931,470
공적특회계 전입금	1,000,000	1,000,000	-	비영자 차입금	933,600	80,000	856,000
이자수입	11,470	2,317	9,153	기본경비	2,400	-	-
예치금 회수	1,922,317	1,000,000	922,317	예치금	1,997,787	1,922,317	75,470

2. 수입 계획

(단위 : 천원)

수입과목		산출기초	'22년 수입액(A)	'21년 수입액(B)	증감 (A-B)
장	관항				
내부거래(50000)					
	전입금(51000)				
	전입금(51100)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51102)	1,000,000,000원×1식	1,000,000	1,000,000	-
자체수입(20000)					
	이자수입(24000)				
	이자수입(24100)				
	예금이자수입(24101)	11,470,000원×1식	11,470	2,317	9,153
기타(40000)					
	예치금회수(42000)				
	예치금회수(42100)				
	예치금회수(42101)	1,922,317,000원×1식	1,922,317	1,000,000	922,317
수입 합 계			2,933,787	2,002,317	931,470

3. 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지출계획					목	산출기초	'22년 지출액 (A)	'21년 지출액 (B)	증감 (A-B)
부 문	정 책	단 위	세 부	사업내역					
유아및 초중등교육									
교수-학습활동지원									
학생생활지도									
학생생활지도지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동북아 평화·통일 역사 탐방					210-13	75,000,000원×2회	150,000	-	150,000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210-13	50,000,000원×5회	250,000	-	250,000
북한교육지원협력사업					320-01	100,000,000원×2회,50,000,000원×1회	250,000	-	250,000
환경조성사업					210-13	110,000,000원×1회,80,000,000원×1회 40,000,000원×1회, 20,000,000원×1회	250,000	80,000	170,000
운영수당					210-06	(1000,000원+50,000원)×10명 ×2회+(60000원×10명×11회)	9,600	-	9,600
일반수용비(행사운영비)					210-01	5,000,000원×3회, 500,000원×10회	20,000	-	20,000
업무추진비					230-02	20,000원×10명×20회	4,000	-	4,000
교육일반									
기관운영									
기본운영비									
기관기본운영비									
위원회운영									
위원회운영					210-06	(80000원+40000원)×10명×2회	2,400	-	2,400
예비비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예치금									
예치금					710-04	1,997,787,000원×1회	1,997,787	1,922,317	75,470
지출합계							2,933,787	2,002,317	931,470

IV. 성인지 기금 운용 계획

1. 성평등 목표

-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강화

2. 성인지 기금 운용 계획 작성 방향

- 남북교육교류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남북 간 남녀 학생들의 평화 및 평등문화 조성

3. 분류별 총괄표

(단위 : 개, 천원)

사업분류	사업개수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 증감	
				(A-B)	증감률
합 계	1개	2,933,787	2,002,317	931,470	46%
1.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0개	-	-	-	-
2. 성별영향평가사업	0개	-	-	-	-
3. 교육부 지정사업	0개	-	-	-	-
4. 자체선정사업	1개	2,933,787	2,002,317	931,470	46%

4. 기능별 총괄표

(단위 : 개, 천원)

부문·정책사업	사업분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1	2	3	4	(A)	구성비	(B)	구성비	(A-B)	증감률
합 계	·	·	·	1	2,933,787	100%	2,002,317	100%	931,470	46%
유아및초중등교육	·	·	·	1	2,933,787	100%	2,002,317	100%	931,470	46%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강화	·	·	·	1	2,933,787	100%	2,002,317	100%	931,470	46%

5. 사업별 설명자료

[세부사업명 : 학생생활지도지원]

사 업 명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예산구조	(분 야) 교육	(부 문) 유아 및 초중등교육
	(정책사업) 교수-학습활동지원	(단위사업) 학생생활지도
정책과제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강화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남북 남녀 학생들이 함께하는 평등문화 조성
- 사업내용:
 - 남북교육교류 사업 시 참여 학생의 남녀 비율을 동등하게 구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함께하는 평등문화 조성
 - 북한교육지원협력 사업 시 북측 남녀 학생들의 양성평등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교구 및 교재 등 지원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대상 사업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 평가사업	교육부 지정사업	자체선정사업
			○

※ 해당되는 칸에 “○”표시

□ 소요 자원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 증감	
			금액(A-B)	증감률
계	2,933,787	2,002,317	931,470	46%
교 특 회 계 전 입 금	1,000,000	1,000,000	-	-
기 부 금	-	-	-	-
용 자 금 회 수	-	-	-	-
예 치 금 회 수	1,922,317	1,000,000	922,317	92%
이 자 수 입	11,470	2,317	9,153	395%
기 타	-	-	-	-

□ 성별 수혜 분석

○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구 분		2019	2020년	2021년
전체	사업대상자(A)	-	-	224,316명
	사업수혜자(B)	-	-	40명
	수혜율(B/A)	-	-	0.017%
여성	사업대상자(C)	-	-	109,455명 (48.3%)
	사업수혜자(D)	-	-	20명 (50%)
	수혜율(D/C)	-	-	0.018%
남성	사업대상자(E)	-	-	114,861명 (51.2%)
	사업수혜자(F)	-	-	20명 (50%)
	수혜율(F/E)	-	-	0.017%

※ 통계출처 및 수혜산식내용

- 통계출처: 서울교육통계
- 사업대상자: 서울시교육청 소속 고등학생 전체 학생 수
- 사업수혜자: 참가 예상 학생 수

○ 예산 구분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결산액	2020년 결산액	2021년 예산액
계	-	-	2,002,317
여성(비율) (D/B)	-	-	50%
남성(비율) (F/B)	-	-	50%

□ 성과달성 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2020년 실적	2021년 추정치	2022년 목표치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문화조성	남북교육교류 프로그램 및 북한교육지원 협력사업 여학생 참여율	.	.	50%

※ 산출근거 및 측정산식: 프로그램 및 협력사업 여학생 참여인원, (여학생 인원수/전체 인원수)×100

□ 성평등 기대효과

- 남녀 균등한 기회 제공으로 학생의 통일 실천 역량 함양 및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

III. 기금운영계획안 부속서류

1.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성액			집행액			잔액 (a-b)
	계(a)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이자	계(b)	비용자성 사업비	기타지출	
2018	-	-	-	-	-	-	-
2019	-	-	-	-	-	-	-
2020	1,000,000	1,000,000	0	-	-	-	1,000,000
2021	1,002,317	1,000,000	2,317	80,000	80,000	-	922,317
2022	1,011,470	1,000,000	11,470	936,000	936,000	-	75,470
계	3,013,787	3,000,000	13,787	1,016,000	1,016,000	-	1,997,787

※ 조성액 및 집행액에서 예치금(회수)은 제외

※ 2020년까지는 결산액 기준, 2021년은 결산액 추정 기준, 2022년은 계획액 기준

2. 예치금 현황

(단위 : 천원)

예치은행	'20년도말 현재액	'21년도말 현재액(a)	'22년도말 현재액(b)	증감 (b-a)	비고
농협중앙회	1,000,000	1,922,317	1,997,787	75,470	

※ 2020년까지는 결산액 기준, 2021년은 결산액 추정 기준, 2022년은 계획액 기준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등에 의거 당해 연도 사업비를 제외한 기금 잔액 등 이자수입 증대 등의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모든 자금을 예치금으로 계상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세부사업 계획안

평생진로교육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담당과장 : 손동빈(3999-476)
담당장학관 : 이원렬(3999-542)	업무담당자 : 임경일(6973-9832)

□ 사업개요

- 기간: 2022. 1. ~ 2022. 12.
- 근거: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2020.9.24. 제7683호)
- 목적: 남북교육교류협력으로 통일교육 활성화 및 점진적인 평화통일기반 조성

□ 사업내용

(단위: 천원)

구분	'22년 지출계획	집행액	지원 범위
역사 탐방	· 남북 교육 상호 발전 및 신뢰 구축을 위한 역사 탐방	150,000	사전(후) 운영비, 탐방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여비 등
남북교육교류 협력사업	· 남북학생간 문화 예술 스포츠 교류 · 학생 교사 북한 교육기관 방문, 자매결연 교육교류 등	250,000	교육교류를 위한 사전(후) 운영비, 인건비, 운영비, 여비 등
북한교육지원 협력사업	· 교육교류를 통한 교구·교재 지원 등 각종 교육복지와 관련된 사업 · 북한 각급 학교에 교육비품 지원 및 북한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과 관계된 교육지원협력 사업 추진	250,000	교육지원(교구, 교재, 비품, 교육복지 등)에 관계된 현물구입 등
환경조성 사업	· 남북 상호 이해 및 발전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메타버스) 구축 · 통일교육주간 축제 및 평화지킴이, 역량 강화 사업 추진	250,000	환경조성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학교 교부금, 인건비, 물품 구입 등
※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공통 예산		33,600	행사용품, 수당 등
기본경비		2,400	위원회 운영
합계		933,600	

·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 남북교육교류사업 특성상 지원 계획 및 지원 범위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예산 집행계획

○ 기금 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금명	'21년도 말 조성액(a)	'22년도 기금운용계획		'22년도 말 조성액(e)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규모 (f=d+e)
		조성계획(b)	집행계획(c)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	1,922,317	1,011,470	936,000	1,997,787	.	1,997,787

○ 집행계획(c) 세부내역

사업 세부 내역	산출 기초	집행액(단위: 천원)
평화·통일 역사 탐방	75,000,000원×2회	150,000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50,000,000원×5회	250,000
북한교육지원협력사업	100,000,000원×2회, 50,000,000원×1회	250,000
환경조성사업	110,000,000원×1회, 80,000,000원×1회 40,000,000원×1회, 20,000,000원×1회	250,000
운영수당	150,000원×10명×2회, 60,000원×10명×11회	9,600
일반수용비(행사운영비)	5,000,000원×3회, 500,000원×10회	20,000
업무추진비	20,000원×10명×20회	4,000
기본경비	(80000원+40000원)×10명×2회	2,400
합계		936,000

□ 주요사업 세부 추진 계획

사업명	평화·통일 역사유적 탐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통일·역사 체험, 갈등의 평화적 모색 · 교사와 학생들 간 평화 통일 공감대 확산 및 평화 역량 강화
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소속 교사 및 학생, 업무 담당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 · 역사유적 현장답사활동을 위한 사전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평화·통일 역사유적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공유
세부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통일 전후 사회통합을 위한 우리의 역할 · (일정) 2022년 7~8월 중, 7박 8일(국내 사전교육 1박 포함) 총2회 · (장소) 독일, 러시아(하바롭스크, 우수리스크, 라즈돌노예, 블라디보스톡), 중국(하얼빈, 둔화, 이도백하, 심양, 단둥, 대련), 백두산 등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사 40명(※ 업무담당자 및 관계자 포함 총 50명) - (2차)서울시교육청 고등학생 40명(※ 업무담당자 및 인솔 교사 포함 총50명) · 추진 일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유적 탐방 운영을 위한 사전실무협의체 운영 - 해당 세부 추진 계획 수립 및 필요 시 학교 간 협약 체결 - 역사유적 및 자료 발굴, 답사 지도 및 답사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공유 · 향후 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이외 지역에서 서울과 평양 지역 등으로 확대 - 역사교육을 위한 공동의 교육자료 제작 및 공유 - 서울-평양 역사교육 연구회 등 역사교육 연구활동으로 확대
예산	금150,000천원(금일억오천만원)

사업명	남북교육교류 협력사업
방향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정세 및 남북 관계 불확실성, 교육당국 간 남북 교류 채널 미비 등으로 인해 기존 교류 채널을 활용한 사업 추진 · 유관 기관 및 부서 간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유지 및 남북 교육교류협력 활성화 · 통일 이후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이해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단체 사업 제안 및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사업 추진 · 사업의 적절성 및 타당성, 북측과의 협의 및 합의 정도 심사를 통한 지원 · 통일부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한 기금 집행 타당성 검토 · 편성된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별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기금 운용 계획 변경을 통해 총액에 대해 증액 편성 가능 ·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및 대한민국 소재 비영리 법인, 관련 단체
연계 · 협력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학생 간 문화예술·스포츠 활동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청소년 음악제, 오케스트라단 상호 초청 공연 등 문화예술 교류 - 체육회 및 유관기관 협력 다양한 스포츠 분야 교류 - 남북 성인 스포츠 교류 재개 시 협업을 통한 공동 추진 ※남북정세에 따라 서울 학생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남북 공통의 공휴일 또는 기념일 (광복절, 추석, 설날 등) (예정) ○ (장소) 서울, 관문점 등 ○ (핵심 활동) 학생 중심 예술문화 공연, 남-북 시, 글, 그림 감상 등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미래교육 발전을 위한 공동 학술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 참가 교육, 교수법 혁신 등 미래교육 분야 학술회의 - 북측 교육전문가 및 교육당국과 연계한 남·북·제3국 활용 학술회의 - 학술회의 기간 중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논의 진행 ·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	금250,000천원(금이억오천만원)

사업명	북한교육지원 협력사업
방향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정세 및 남북 관계 불확실성, 교육당국 간 남북 교류 채널 미비 등으로 인해 기존 교류 채널을 활용한 사업 추진 · 유관 기관 및 부서 간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유지 및 남북 교육교류협력 활성화 · 인도적 지원을 통한 남북한 신뢰 구축 및 민족동질성 회복 계기 마련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단체 사업 제안 및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사업 추진 · 통일부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한 기금 집행 타당성 검토 · 교육교류를 통한 교구·교재 지원 등 각종 교육복지와 관련된 사업 · 북한 각급 학교에 교육비품 지원 및 북한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과 관계된 교육지원협력 사업 추진
연계·협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학교, 학생 등 교육분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인도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 하반기 (※상반기에는 협의체 구성을 통한 실무협의) - (방법)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이 가능한 단체와 협력 - (지원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교육교류를 위한 교구 및 교재 등 (2차) 학생 의식주, 보건, 건강,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 등 - (예산) 물품구입비, 운송비, 운영경비(위탁비) 포함 - (사업추진 방식) 민간위탁 관련 업무 협약 후 사업 위탁비 교부 및 정산
예산	금250,000천원(금이억오천만원)

사업명	환경조성 사업
방향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교육류협력 사업 공감대 형성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 ·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평화통일 체험활동 기회 제공 ·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학교급별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생각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상호 이해 및 발전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메타버스) 구축 · 통일교육주간 축제 및 평화지킴이, 역량강화 사업 추진
세부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상호 이해 및 발전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메타버스) 구축(1억 1,000만원) · 함께 만드는 평화, 통일 페스티벌 운영(8,0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서울시내 초·중·고 학생 및 교사, 학부모 - 내용: 함께 생각해보는 평화 체험활동을 통한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 방법: 단체 또는 개별로 참가, 온·오프라인 연계 체험활동 - 시기: 2022년 상반기(통일교육주간, 5월 넷째주) · 평화통일 청소년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4,0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서울시내 초·중·고 학생 총40명 - 내용: 통일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평화·통일 문제를 인식하고 통일 리더로 활동할 수 있는 통일미래 인재 양성 - 방법: 통일캠프, 아카데미, 강연, 토론회 등 연간 프로그램 운영 - 시기: 2022년 상반기 대상 선정 후 연간 운영 ·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2,0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통일업무 담당 교사 및 위원회 위원, 교육청 관계자 등 - 내용: 참관활동, 토의·토론, 포럼 등을 통한 역량 함양 - 시기: 2022년 상·하반기 1기씩 총2기 운영
예산	금250,000천원(금이억오천만원)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5. 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4조(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와 재원 조성) ① 교육청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참고자료 4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9. 24.] [서울특별시조례 제7683호, 2020. 9. 2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교육 및 학예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상호 이해 및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개하는 각종 교류와 협력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사업의 기본 원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남북 간 왕래·접촉 등의 일반원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협력사업의 범위) 협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청과 북한 교육 관련 기관·단체와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교류협력
2. 교육청 소속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북한 지역 학생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3.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남북교육교류협력정책

제6조(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① 교육감은 협력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협력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협력사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협력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4. 협력사업 진행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계획
5. 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민관협력체계 구축과 지원) ① 교육감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급 학교와 서울특별시, 자치구, 남북교류협력 관련법인 및 단체 등과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관내 소재하고 있는 남북교육교류협력 관련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이나 기금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제8조(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청의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남북교육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 협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및 소관부서 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남북교육교류협력 분야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남북교육교류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2.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 제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안건 및 의결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육교류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4장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 제14조(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와 재원 조성)** ① 교육청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에 수입금으로 조성한다.<개정 2020.9.24>

- 제1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5조에서 정한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지원

- 제16조(기금의 관리·운영)**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을 따른다.
 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남북교육교류 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남북교육교류업무 담당 장학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③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을 고유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교육감이 기금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존속기한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7명으로 구성하고, 부교육감과 소관 부서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부서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남북교육교류협력이나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기금 운용 및 관리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2.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21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기금 결산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육교류업무 담당부서의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 ⑤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안건 및 의결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23조(포상) 교육감은 협력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공무원, 학생, 학교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7683호, 2020.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